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와 그 유가족을
국가보훈의 영역에 포함〉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7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및 입법필요성 검토	4
가. 제정안의 체계	4
나. 제정안의 필요성	5
2.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	12
3. 의료지원 등	14
4. 체계·자구 검토	16
5.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17
※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10.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안 제4조).
-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 및 제3장).
-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4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및 입법필요성 검토

가. 제정안 체계

□ 제정안은 총칙(제1장)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용대상자 등을 규정하며, 실체적 조항(제2장~제3장)에서 의료지원·양로지원·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규정하는 등 총 5장 3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법률안 조문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 (정부의 시책)
제4조 (적용 대상자)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예우 원칙)
제7조 (등록 및 결정)
제8조 (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의료지원
제11조 (의료지원)
제12조 (진료)
제13조 (의학적 재활 등)

제14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장 그 밖의 지원
제15조 (양로지원)
제16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7조 (요양지원 신청)
제18조 (조사·질문 등)
제19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제23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4장 보칙
제24조 (예우의 정지)
제2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 (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28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 칙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정안의 필요성

- ☐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받은 사람에 해당하고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은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1979년 부마항쟁, 1989년 전교조결성 해직사건, 1987년 민주화운동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임. 이에 2000년 1월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2013년 6월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실시한 바 있음.

<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인정 현황 >

(‘24.6월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구류·수배 등*
합 계	10,520	926	137	789	9,594	6,412	2,320	331	531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	9,844	829	136	693	9,015	6,395	2,300	320	-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인정 현황	676	97	1	96	579	17	20	11	531

* 구류·수배 등은 구금포함

자료: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추진단), 부마민주항쟁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보상 현황 >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 중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부마항쟁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신청·지급결정 된 현황(신체검사 미수검자 제외))

(‘24.6월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 급 결 정		
			인 원(A)	금 액(B)	평균지급액(B/A)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	총 계		4,988	116,930	23.4
	보상금	소 계	782	43,183	55.2
		사망자	122	16,805	137.7
		상이자	660	26,378	40
	생활 지원금	소 계	4,206	73,747	17.5
		유죄판결자	3,084	39,400	12.8
		해직자	936	33,489	35.8
		등외판정자	186	858	4.6

* 보상금(사망자, 장애등급 14급) : 평균(사망 1억3천만원, 상이 3천8백만원), 최고 2억8천
생활지원금 : 30일 이상 구금(1천5백~5천만원), 1년이상 해직(2천9백~5천만원), 상이기준미달(4백8십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추진단

(‘24.6월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 급 결 정		
			인 원(A)	금 액(B)	평균지급액(B/A)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른 보상	총 계		204	4,958	24.3
	보상금	소 계	58	3,779	65.2
		사망자	1	160	160
		상이자	57	3,619	63.5
	의료 지원금	상이자	71	690	9.7
	생활 지원금	소 계	75	489	6.5
		30일 이상구금자	46	176	3.8
		등외판정자	23	108	4.7
		1년 재직 후 해직자	6	205	34.2

* 보상금(사망·부상자): 평균(사망 1억5천만원, 상이 6천8백만원), 최고 3억
의료지원금(부상자): 평균 6천1백만원, 최고 2천9백만원
생활지원금: 30일 이상 구금(54만원~3천7백만원), 1년이상 해직(2백9십~5천만원), 상이기준미달(230~480만원)
자료: 부마민주항쟁보상심의위원회

□ 한편, 4·19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따라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입법례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사망자·행불자·상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 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되, 그 지원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즉,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달리 제정안은 교육지원, 취업 지원, 대부지원, 양육지원 등은 재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지원 내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 제정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주요내용 비교표 >

제 정 안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조 문		주요내용	
총칙(제1장)	목적(제1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정부의 시책(제3조)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 실현의 이념 기리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마련	좌동
	적용대상자(제4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5조)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미성년 제매	좌동
	예우의 원칙(제6조)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예우함	좌동

제 정 안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조 문	주요내용	
교육지원	-	수업료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지원	-	취업지원, 채용시험의 가점 등
의료지원(제2장)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좌 동
대부지원	-	대부지원: 300만원 ~ 6,000만원
그 밖의 지원 (제3장)	양로지원 (제15조)	무의탁자 본인 또는 유족(남65세, 여60세 이상)
	요양지원 (제16조)	유공자 또는 유가족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제2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양육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주택의 우선공급	-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제22조)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보칙(제4장)	제24조, 제25조, 제28조 예우의 정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위임 및 위탁 등	좌 동
벌칙(제5장)	제29조~제30조 벌칙, 과태료	좌 동
부 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	-

□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률¹⁾²⁾에 따라 국가 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예우·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입법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13호)
-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먼저,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동일취지의 법률안이 계속 발의된바 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임기말 폐기된바 있었음.³⁾

□ 제21대 국회에서는 2024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우원식의원안과 전재수의원안을 통합·조정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음.

○ 그러나, 민주유공자 선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어 민주유공자 결정과 관련하여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우의 대상인 민주유공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24.5.29.)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⁴⁾

○ 참고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사실상 동일함.

3) 【참고자료 1】 동일취지 법률안의 논의 경과

4) 참고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유공자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특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자를 모두 유공자로 편입하는데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의견과,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유공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행위와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적용대상자를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 가운데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은 충분하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제1소위('23.3.9.),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제1소위('23.7.4.) 등]

□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법률상 명확한 심사기준이 부재하여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련자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는 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여 국가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1항제2호에 따라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학 입학 관련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

- ☐ 현재 국가보훈의 영역에 포함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혁명 관련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있음.
- ☐ 제정안은 4·19혁명관련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지원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예우 등을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비교>

구 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적용법률	국가유공자예우법	5·18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예우법(안)
적용대상	사망·행불자, 부상자(7급 이상)	사망·행불자 부상자(14급이상)	사망·행불자 부상자(14급이상)
	건국포장자 (지도자 등)	희생자 (보상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 4.19유공자는 다른 법에 따른 보상 없이 국가유공자로 바로 진입, 5.18 및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별도의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음

자료: 국가보훈부

- ☐ 한편,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또는 부상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총 926명이며, 명예회복(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을 받은 대상자는 9,594명임. 제정안은 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926명

에 대하여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인정 현황 >

(‘24.6월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구류·수배 등*
합 계	10,520	926	137	789	9,594	6,412	2,320	331	531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	9,844	829	136	693	9,015	6,395	2,300	320	-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른 인정 현황	676	97	1	96	579	17	20	11	531

* 구류·수배 등은 구금포함

(자료: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추진단), 부마민주항쟁보상심의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및 4·19혁명 관련자 등록 현황 >

(‘24.6월 현재, 단위 : 건, 명)

구 분	합계	5·18사망행불자 4·19혁명사망자	5·18부상자 4·19혁명부상자	그 밖의 5·18희생자 4·19혁명공로자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등록 현황	4,478	159	2,767	1,552
「4·19혁명 관련자」 등록 현황	887	30	347	510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에 대해서는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사망 또는 부상자 외에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도 유공자로 인정하였는바,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된 자도 그 피해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의료지원 등

- 제정안 제2장부터 제3장까지는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주요내용 비교 >

제 정 안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조 문	주요내용	
교육지원	-	수업료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지원	-	취업지원, 채용시험의 가점 등
의료지원(제2장)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좌 동
대부지원	-	대부지원: 300만원 ~ 6,000만원
그 밖의 지원 (제3장)	양로지원 (제59조)	무의탁자 본인 또는 유족(남65세, 여60세 이상)
	요양지원 (제16조)	유공자 또는 유가족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2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양육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주택의 우선공급	-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제22조)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좌동
		무의탁 미성년자녀(제매)
		부상자와 동반 1인
		고궁과 공원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민영·공공주택 등 우선공급
		좌동

- 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요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육, 수송시설이용,

고궁 등의 이용, 주택의 우선공급,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등의 지원 중에서 의료, 양로, 요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등의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의 지원 관련 규정들을 보면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의 체계, 규모 및 방식 등에 있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서는 5·18민주유공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받거나 의료지원비 등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경우에도 지급된 의료지원비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을 환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체계·자구 검토

□ 양로지원 등의 위탁

안 제21조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양로지원 또는 양육지원을 할 때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로지원에 관하여는 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⁶⁾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양육지원의 위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서는 양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필요시 국가보훈부장관은 양육지원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안 제15조(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7) 양육지원에 대하여는 21대 국회 정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삭제되었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u>양로지원 및 양육지원</u> 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복지시설· <u>아동복지시설</u>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u>양로지원과 양육지원</u> 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1조(<u>양로지원</u> 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u>양로지원</u> 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u>양로지원</u> 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5.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 2024년 6월 기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신청자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10,520명이며, 그 유가족은 41,028명임. 이 가운데 제정안에 따른 민주유공자 본인은 926명⁹⁾이며, 그 유가족은 3,611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제84조(양로지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양육지원)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9) 2024년 6월 기준 사망·행방불명자는 137명, 부상자는 789명으로 제정안의 대상자는 926명임

<제정안에 따른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현황>

(단위 : 명)

구 분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민주운동 관련자 상	제정안의 민주유공자 (사망자 및 부상자)
본 인	10,520	926
유가족*	41,028	3,611
합 계	51,548	4,537

* 사망·상이자에 따른 유가족 수 : 5·18민주유공자의 본인/유족 비율 적용(3.9배)

자료: 국가보훈부

- ☐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5년에 15.5억원, 2026년 16.3억원
으로 향후 5년간 85.8억원(연평균 1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연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의료지원	8,260	1,652	1,485	1,567	1,646	1,735	1,827
요양지원보조	35	7	6	6	7	7	9
재가복지	290	58	59	59	59	59	54
합 계	8,585	1,717	1,550	1,632	1,712	1,801	1,890

자료: 국가보훈부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자료 1

동일 취지 법률안의 논의 경과

□ 제16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민주유공자법 제정논의¹⁰⁾.

□ (16대) 이훈평 의원 발의

- '00. 12. 04. 이훈평 의원 대표 발의
- '01. 02. 19.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01. 03. 07. 공청회 개최

진술인	진술내용
강○○ (방통대 교수)	▪ 민주화유공자는 다양하므로 민주화에 공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 ▪ 희생자는 피해자의 개념으로 4·19혁명공로자는 건국포장을, 특별공로자는 국무회의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취지 고려 필요
김○○ (수석연구위원)	▪ 광주유공자는 단일·대상이 분명하나 민주유공자는 광범위하며, 희생자 예우시 경찰 등이 양민학살자로 전락하므로 옥석구분 고민 필요 ▪ 참전자·고엽제환자 등 호국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이분들에 대한 개선도 동시 추진 검토
김○○ (경기대교수)	▪ 민주화운동자 보상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 ▪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나 단체의 반발도 고려 대상
남○○ (경기대교수)	▪ 4.19유공자나 전몰 미망인에 비해 민주화관련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액 상당, 원칙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 '01. 12. 21. 법 제명을 「민주유공자 예우법」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가결
- * 법 적용 대상자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자로 한정

□ (17대) 정봉주, 이호웅 의원 발의(2건)

- '04. 09. 20. 이호웅 의원 대표 발의
- '04. 09. 24. 정봉주 의원 대표 발의
- '05. 06. 20. 공청회 개최

10) 6·3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단일 민주화 사건의 관련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예우하기 위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바 있음.

진술인	진 술 내 용
이○○ (한국시사문제 연구소 소장)	▪ 피해 보상자를 유공자로 예우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공정성 시비 우려 ▪ 6.25참전자 등 소외계층을 제쳐놓고 민주유공자 예우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처사, 군 사기 저하 및 국민개병제도 손상 우려 ▪ 민주화란 이름으로 구금·수배자, 해직자, 학사징계자 예우는 특정 세력만을 위한 것이며, 국가유공자 권위가 손상
여○○ (남북전략연구소 소장)	▪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제한, 범위 최소화 필요 (구금·수배, 해직 또는 취업거부 6개월 이상, 여권발급 거부자는 제외) ▪ 민주화보상법에서 보상받은 자를 예우법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이중보상
정○○ (변호사)	▪ 민주화관련자가 아직까지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 대우 ▪ 피해를 입은 정도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 ▪ 보안법은 민주화운동의 탄압 도구로 사용, 위반자 배제는 부당
이○○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제시된 안으로서 이미 16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므로 조속히 제정 요망 ▪ 민주화운동 시기를 1948년 또는 1961년으로 시점을 당겨야 함 ▪ 보안법은 민주화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이용,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 조항을 조속히 제정 요망

□ (18대) 유선호 의원 발의

- '08. 08. 04. 유선호 의원 대표 발의
- '08. 12. 11.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4.19나 5.18과 같은 단일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화운동이라는 비슷한 성격이라면 보훈대상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양심의 자유를 지키거나 자기 가치관에 의한 것까지 국가유공자로 하면 정부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 (19대) 문병호 의원 발의

- '12. 09. 27. 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 '13. 06. 20.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13. 05. ~ 12.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연세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 '민주화보상위'에서 인정된 관련자의 다수가 국가보훈 차원의 유공자 인정은

곤란하며, 예우가 꼭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분야 관련자만 엄선하도록 제안함.

□ (20대) 김병관 의원 발의

- '17. 11. 13. 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 '17. 11. 27.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18. 05. ~ 9.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다수(69.2%가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피해유형 인정기준에서 사망·상이자는 다수국민(92.5%)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피해가 경미한 학사징계 등은 제외하는 의견이 다수임.

□ (21대) 우원식, 전재수 의원 발의(2건)

- '20. 09. 23.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 '22. 09. 22.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 '23. 03. 09./05.16./06.20./07.04.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23. 07. 04. 정무위 법안소위 대안의결
- '23. 12. 14. 정무위 안전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 대안의결
- '24. 04. 23. 본회의 직회부 의결
- '24. 05. 28. 본회의 대안의결
- '24. 05. 29. 대통령 재의 요구 이후 임기만료 폐기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 인정사례

구 분	사 건 별		
1. 정 치·반독재 운동(4,961건)	○ 한일회담반대운동(64-67년)-84건 ○ 삼선개헌반대운동(69년)-40건 ○ 부마항쟁(79년)-39건	○ 서 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85년)-10건 ○ 구 로구청 점거농성 사건(87)-50여건 ○ 3당합당 반대시위(90년)-120여건	○ 5.18특별법 제정촉구 시위(93년)-30여건 ○ 긴급조치위반 사건(74-79년) 등 기타-4,588건
2. 사 상·이념 단 체 결성 및 활 동(734건)	○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64-67년)-10건 ○ 민청학련사건(74년)-90건 ○ 인혁당재건위사건(75년)-35건	○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79년)-10건 ○ 남민전사건(79년)-50건 ○ 양 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사건(81년)-10건 ○ 민중교육지 사건(84)-10건	○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85)-10건 ○ 애학투사건(건국대점거농성 86년)-160여건 ○ 제현의회(CA)그룹사건(86년) 등 기타-349여건
3. 언론민주화운동 관련(371건)	○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74년)-110여건	○ 조선자유언론실천운동(75년)-30여건	○ 신군부 언론인강제해직사건(80년) 등 기타 231여건
4.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 활동(1,788건)	○ 전교조결성 해직사건(89년 이후) 등 1,698여건	○ 중고사립학교 학원민주화사건(89년 이후)-50여건	○ 조선대·세종대 등 학원민주화사건(89년 이후)-20여건
5. 노동운동 관련(1,417건)	○ 전태일분신사건(70년)-1건 ○ 청계피복노조사수투쟁사건(77-88년)-20여건 ○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76.80년)-80여건	○ 반 도상사 노조탄압사건(78-80년)-20건 ○ 원풍모방 노조민주화사건(80-82)-160여건 ○ 대 우어패럴/구로연대투쟁사건(85년)-100여건	○ 풍산금속 노동쟁의 사건(89-90년)-45건 ○ 현대중공업노동쟁의사건(87,89,90년등) 등 기타 991건
6.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129건)	○ 박종철(87년), 이한열(87년), 강경대(91년) 등 129명	-	-
7. 기타(464건)	○ 부산동의대사건(89년)-52건	○ 통 일운동관련사건(88-89)-60여건	○ 농민운동 관련(87년 이후) 등 352여건

자료: 국가보훈부